

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

(사)한국소방기술사회(이하 ‘기술사회’이라 한다)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지역본부(이하 ‘LH’라 한다)는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.

제1조【목적】

본 협력은 기술사회와 LH가 상호 신뢰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, 공동주택 입주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2조【기본원칙】

양 기관은 상호 협력에 있어 당해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우호적 기반 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.

제3조【협력사항】

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양 기관의 법령과 내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력하며, 구체적 이양을 위한 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.

1. 공동주택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안전관리 지원
2.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
3. 소방안전에 관한 기술자문 및 최신기술 정보공유
4. 기타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항

제4조【비밀유지】

양 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 및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업무협력 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.

제5조【협약기간】

본 협약서에 의한 협약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어느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.

제6조【협의조정】

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, 양 기관의 의견차이가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.

이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10월 10일



회 장



경기지역본부장

(서명)

주승호

(서명)

김종모